

#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59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2. 06. 14.

발 의 자 : 유인환 의원 외 2인

## 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(2011.10.15. 시행)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법률 정비대상 용어를 법제처와 국회 기준으로 순화하여 사용하고자 함. 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(안 제5조제1항)
- 나. 법률 정비대상 용어를 법제처와 국회 기준으로 순화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##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같은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”로, “관한 절차 기타”를 “관한 절차와 그 밖에”로, “규정 함”을 “규정함”으로 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범위 이내로”를 “범위에서”로,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지체없이 이”를 “지체없이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필요한 때”를 “필요한 경우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17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

3.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46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기업과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
제5조제1항제4호 본문 중 “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법 제151조의 규정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전단 중 “필요한 때”를 “필요한 경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

항 중 “거부한 때”를 “거부한 경우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, “있는 때”를 “있는 경우”로 한다.

제15조제3항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16조 중 “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”를 “다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경우”로 한다.

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른”으로 한다.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(이하 “감사”라 한다)와 행정사무조사(이하 “조사”라 한다)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같은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관한 절차와 그 밖</u> <u>에</u> ----- <u>규정함</u>----- -----.</p>
<p>제2조(감사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의 범위 이내로 실시하되,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은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<u>의하여</u> 행한다.</p>	<p>제2조(감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범위에서</u> ----- ----- ----- <u>따라</u> ----- -----.</p>
<p>③ · ④ (생략)</p> <p>⑤ 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<u>지체없이</u> 이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</p>	<p>③ ·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----- ----- <u>지체없이</u> ----- -----.</p>

제4조(사무보조자)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.

제5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)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(생략)
2.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08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
3.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과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4. 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(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)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. 다만, 본회의가 특

제4조(사무보조자) -----  
-----  
----- 필요한 경우-----  
-----  
--.

제5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) ①-----  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17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
3.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46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기업과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4. 법 제151조의 규정에 따른 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.

②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협의하여야 한다.

제9조(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)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,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,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,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해야 하며,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·③ (생략)

④ 제3항에 따른 이유서도 제출

-----  
-----.

②----- 따른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9조(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) ①  
-----  
----- 필요한 경  
우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은 이 사실을 군수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
-----  
-----  
-----  
거부한 경우-----  
-----  
-----.

제10조(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)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, 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.

제10조(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) 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그 밖-----  
-----.

제12조(제척과 회피) ① (생략)

제12조(제척과 회피) ① (현행과 같음)

②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.

②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해당 -----  
-----  
-----.

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

③----- 해당 -----  
----- 있는 경우-----  
-----.

④ (생략)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) ①·② (생략)

③군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6조(징계)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,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,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평창군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.

제17조(과태료) 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과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~ 4. (생략)
- ②·③ (생략)

제15조(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-----  
----- 따라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16조(징계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다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경우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17조(과태료) ① -----  
----- 따른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- ②·③ (현행과 같음)